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의 입법방향

주제발표자 : 이 찬 진(변호사)

1. 머릿말

여성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의 범위와 그 방향은 결국 가정폭력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그 대응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가정폭력이 한국사회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입법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태분석은 더욱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사회연대성의 원칙 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문제로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법의 입법의 필요성은 바로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보호 를 통한 사회보호 라는 측면에서 공인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바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적극적인 사법 및 경찰서비스의 입법화가 관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국민적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방지 서비스전달체계의 수립과 사법 서비스 전달체계를 입법화하는 방향의 접근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와같은 접근방법은 현단계의 한국사회의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와 소극적인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의 낙후라는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특히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전향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로 하며, 몇가지 법률의 개정(특히, 사법제도와 경찰법령의 개정)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요청되지만 정부 등 입법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입법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 코네티컷 주 등 가정폭력 방지입법이 발달된 몇가지 입법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 단계의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 사법서비스 제도에 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분석의 틀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92.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표본조사한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2.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가.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입법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단지 가정내에서의 학대 당하는 노인, 아내 또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위 법률의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

나. 소위 가정폭력 의 개념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즉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족구성원의 정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아내)인 친족, 친형제관계등에 국한되어 법률상 정의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적어도 1)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2) 사실혼 관계의 자

및 종전 관계자 3) 양당사자간에 친생관계가 추정되는 등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자 상호간(여기에는 자녀의 노인학대문제와 부모의 아동학대를 포함한다.) 4)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3자 상호간(계모, 계부의 문제)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주의 구성원들 상호간의 폭력관계 역시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족내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회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입법시 가족구성원의 개념은 위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다.

다. 입법시 아내학대 의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의 문제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제기를 하는 주체가 여성계였다는 특수성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정폭력 은 남편의 아내폭행 (아내학대)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축소되어 논의되어 온 경향이 크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동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내의 아동학대 와 노인학대 의 문제가 가족영역에서 아내학대에 버금가는 가정폭력의 문제로서 대두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안동현, 홍강의 저 한국에서의 아동구타현황 1989. 아동학대예방학회 참조) 그럼에도 아동학대 의 문제는 현행 가족법 구조상 자녀가 부모의 친권의 대상으로 규율되는 관계로 부모의 양육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부모 공통의 의식구조때문에 은폐되어 왔고 이를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 방치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학대 의 문제 역시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질 뿐 산업화 및 핵가족화하는 사회에서 특히, 노후 소득에 대한 별다른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대당하는 노인들의 보

호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시에는 반드시 아동 및 노인 학대방지 라는 관점도 관철되어야 될 것이다.

라.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라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은 가족의 사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정폭력의 방치는 결국 부부의 이혼문제나 가출아동문제를 통한 요보호아동, 유기된 노인들 을 양산하는 등 궁극적으로 해당 가족 공동체의 사실상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며, (가정 환경상실 어린이는 부모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92년도에 5만 7천쌍의 부부가 이혼하였는데 지난 20년간 이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혼자사는 가구도 15년간 3.6배나 증가하여 1백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소년, 소녀가장도 93년도 7천3백22명으로 8년 전보다 50%나 증가하였다. 이혼 사유의 과반수 가량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94년 5월 14일 통계청 가정현황 보고서, 국민일보 95.5.14) 설사 이와같은 가족의 해체가 없더라도 폭력적 성향 의 재사회화 내지는 재생산구조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따라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사회연대성의 원리 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1) 가정폭력의 치료와 예방사업을 위한 조직적인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2)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서비스 및 치료,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개입 등이 가족지원 및 보완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연계운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피해가 중한 경우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적 대책이 전제되거나 최소한 이와 병행되어 이와같은 사회복지적 관점이 반영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당해 폭력의 태양에 따른 기존의 실정법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같은 사회복지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내용으로 아내학대를 주안점을 두어서 가해자인 남편의 구속 등 형사 강제처분을 효율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 개입 및 형사 사법권발동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이라는 법률효과를 달성하는데 현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런지는 몰라도 결국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통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악결과만을 초래하는 또다른 무익한 입법이 될 위험이 크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형사처분을 수반하는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족구성원 상호간에는 현재보다도 더욱 크고 집요한 사후적 분쟁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가족구성원 중 특히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삶의 터전인 가정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대책이 없이 단지 처벌법으로서의 형사특별법적 관점의 입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바. 가정폭력에 관대한 국민일반의 규범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이나 이에 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나 형사사법적 대책의 입법에는 가정폭력에 관용하는 사회적 규범의식을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국가적인 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제1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입법 방향

현재 가정폭력에 관한 형사사법적 대책에 관한 국민일반의 의식구조는 민사적인 관점의 비중이 크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 일종의 격리명령조치에 대하여는 1198명의 각계 각층의 남녀 동수의 표본조사자중 942명이 찬성하여 응답자의 78.6%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2) 폭행가해자로 하여금 재산처분 금지하게하는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1,052명이 찬성하여 응답자의 87.7%가 찬성하였으나 3) 형사사법적으로 구타남편을 사건발생 즉시 무조건구속하는 특별법에 대하여는 331명이 찬성하여 응답자의 27.6%만이 찬성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p 178 표8-8 참조) 이 글에서는 이와같은 국민일반의 입법의식을 고려하였고, 가정폭력 문제는 세계 각국중 특히 미국에서 극심한 사회문제로 국가적 과제로 취급되어 왔고, 이에따른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일련의 입법 역시 매우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미국법제는 앞으로의 입법 또는 법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입법방향을 모색하였다.

3.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방향

가. 총 칙

(1) 가칭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1)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관계구축 등 1차적 예방 2) 폭력발생시의 초기단계에서의 피난처나 치료의 제공을 통한 2차적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충분히 규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칭 가정보호국 내지 가정보호과 등의 최소한의 직제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및 예산 책정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국가책임과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이와같은 총론적인 부분을 정리한 후 각론 사항으로서 각종 사회복지대책 (이는 민사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진다.)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법규를 규정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를 두고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폭력이나 흉기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의 경우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한다.

이에 관한 시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예시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 보호, 유지 책임

1항 : 국가와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폭력발생시

의 피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이하의 행정기관 경찰관서에 해당 직제를 설치하고 전문공무원을 육성,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이라 함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사이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법상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단,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위험이 현존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한다.

(구성요건을 엄격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상호간을 말한다.

가.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나. 사실혼 관계자 및 종전 관계자

다.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 당사자

라.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3당사자

3. 1차적 예방 이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도록 가족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을 회피하기 위한 가족이나 세대구성원 또는 장래의 부모들에 대한 교육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2차적 예방 이라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초기상황에 개

입하고 현재의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문제의 확대를 방지한 것으로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난처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자조집단의 조직 및 유지, 발전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가서비스의 제공 등 가정폭력에의 대응 및 치유,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공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정보호처분 이라함은 가정폭력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여 발하는 각종의 긴급명령, 보호명령 등 일체의 제한명령 등을 말한다.

나. 제2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 (1)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는 주거 및 비주거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각각 이에 대한 피난처나 의료서비스와 상담등의 제공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같은 서비스 공급주체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영리단체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가정(소위 안전한 집 개념)을 이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에 관하여는 소위 빈곤선, 혹은 최저생계선 또는 그 이상 등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일정소득이하의 자에게는 무상으로, 기타의 자에게는 일정한 비용산정방식에 의한 서비스요금을 청구(후불제)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교육기관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들으로써 가해자 본인에 대한 구타 방지와 교육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인된 구타자 교육 과정(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

(2) 가정폭력방지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조직 구축 내용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각종 제한명령을 집행할 담당 경찰관들의 조직, 운영
및 임무등을 규정하고 교육명령을 집행할 담당공무원의 조직,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임무내용으로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후원자로서 해당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지며 각종 교육과 보호,
직업훈련과 기술제공을 위한 2차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 가족의 원조등에
대한 정책 개발등으로 명시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민간 비영리단체와 가정등의 공공적인 감독과 전문가 교육개발, 기
술적인 원조의 제공등,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시행, 여론수집 활동등
각종 복지행정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둔다.

다. 가정보호처분

(1) 가정폭력사건의 관할

(가)가정폭력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은 형사사법에 의한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에
있다고 할 것이나 가정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일반형사적 처분
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관련 당사자들의 사법적인 분리
명령에 의한 당사자 스스로의 폭력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사
적 실현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이와같은 중간단계의 과정을 가정보호
처분제도로 칭한다.

(나) 가정폭력사건은 1)긴급보호명령의 경우에는 일반형사사건처럼 검찰에 의하
여 수사권이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에 의하여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이 인정되고 동 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법원의 가정

폭력전담판사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을 송치하고 인신구속 등에 관한 영장발부 등 강제처분여부를 품신하여 담당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2)기타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기타 최소한의 범위내의 이해관계인(긴급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 긴급보호처분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사건은 일반보호처분청구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위 사건은 송치한 담당 경찰관에 의하여 당사자 대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근거규정을 둔다.)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법원의 명령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가정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과 각 지원별로 사법부의 업무분장에 따라 가칭 가정보호처분 전담부 또는 가정보호처분 전담판사 를 구성하게 하여 위와같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청구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본건 가정 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보호처분(또는 명령)에 관한 심리,결정을 전담하게 한다.

(다) 가정보호처분 전담부 및 전담판사의 업무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당사자등에 의하여 청구된 사건을 심리하여 본 법에서 정한 중범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를 첨부하여 즉시 검찰로 위 사건을 이송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보호처분의 심리를 개시하여 각종 임시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2) 가정보호처분의 종류

여기에는 긴급보호처분과 일반보호처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1)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명령 2)가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에의 위탁명령

(구속영장의 발부와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규정한다.) 3) 임시퇴거명령 4) 임시친권명령 5) 임시부양명령 6) 금전배상명령 7) 기타 명령(교육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명시한다.

(3) 가정폭력사건의 사안별 처리

(가) 긴급보호명령

1) 긴급한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한 담당경찰관은 명령청구인이 청구서상에 주장하는 가해자의 최근의 폭력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면 24시간(또는 48시간)이내에 이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자신의 이름으로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에게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과 2) 아동이 가족구성원의 최근의 학대 및 그 위협에 의한 현재 및 급박한 장래의 학대 위험에 처해있는 사실 등을 가해자의 상대방인 부모 또는 후견인, 양육담당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판사에게 직접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확인한 담당경찰의 직접청구를 하는 2중적 청구방식을 규정하도록 한다.

2)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는 경찰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전송문서(신속한 접수를 위하여)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담당 경찰에 대한 전화상의 확인 등에 의하여 위와같은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상황에서 보호명령을 발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둔다.

3) 긴급보호명령의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침해의 금지, 가해자의 보호시설에의 일시 위탁을 명하는 것과 위험에 처한 피해자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시

적인 보호(피난처나 안전한 집 등 주거 및 비주거 보호프로그램에 위탁과 각 지원 접근방법 프로그램에의 위탁등)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보호명령서에 앞서 규정한 각종 처분 중 합당한 처분을 기재한다.

2) 기타 일반보호명령

가) 위와같은 긴급보호명령에 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일반보호명령청구사건으로 심리를 개시하고, 긴급보호명령사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건 역시 일반보호명령사건으로 이에 관한 심리를 개시한다.

나) 일반보호명령의 내용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결정하되, 심리기간은 2개월 이내로 집중심리, 결정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다.

(4) 가정보호처분의 강제력 확보장치

가정보호처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몇년이하의 징역 또는 소정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둌으로써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근거규정을 둌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확보한다.

법원이 발하는 각종 명령서에도 이와같은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위와같은 법원의 각종 처분시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청구인과 가해자, 경찰관에게 각기 명령서등본을 1부씩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다.

가정보호처분이 발부된 당사자간에 위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받은 담당경찰관은 반드시 가해자를 입건한 후 담당 재판부 또는 판

사에게 이를 송치한다. 이를 송치받은 담당 재판부 및 담당판사는 필요적으로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심리 후 일반형사사건으로의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검찰로의 이송 또는 또다른 가정보호처분을 발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또한 각종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급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부가하는 규정을 둔다.

(5) 시설위탁명령의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

긴급보호명령중 위탁명령의 집행개시요건은 담당판사로부터 명령이 발부될 경우 담당 경찰관(집행기관으로 규정한다.)이 그 전송문서사본에 의하여 24시간 (또는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긴급보호명령청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은 관할 법원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다.

(5) 당사자의 합의와 가정보호처분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대하여 긴급보호명령 또는 일반보호명령에 관한 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히 발부된 각종 보호명령은 실효된다. 단, 가해자에 대한 시설위탁명령의 경우 위와같이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취하시에도 법원은 필요적으로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교육예방프로그램의 참여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변경된 명령을 발부하도록 한다.

(6) 가정보호처분의 법률효과

위와같은 민사적 보호명령은 해당 명령상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법률상 당

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위 내용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이에 관한 관련 당사자 및 경찰관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 등을 둔다.

라. 형사사법적 통제방법

상습가정폭력 또는 흥기등을 이용한 상해등 법률에서 엄격한 규정을 둔 소정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형사특별절차법으로서 피해당사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담당경찰관이 기초 사실관계를 24시간 또는 그 내외기간 이내에 조사하여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에게 이를 송치하게 하고 이를 송치받은 가정보호처분 담당판사는 일반형사사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당일 즉시 결정하여 앞서 본 바와같이 1)일반형사사건으로 할 경우는 그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검찰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게 하고, (형사이송처분이라고 명명한다.)

2) 일반형사처분으로 즉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형사이송처분을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 형사이송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단기 시설 위탁 및 보호명령을 부가한다.

위 제도는 담당판사가 각종 보호명령 및 격리, 분리명령과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의 참여를 일반보호명령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중첩적으로 발부하고 위와같은 집행정지결정에서 결정한 소정의 유예기간(가령 6개월이나 1년 등)동안 판사가 발부한 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한 촉탁기관등으로부터의 결과보고 등을 참작하여 유예기간 만료시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를 소

환하여 심문을 한 후 형사이송처분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게 한다.

3) 증거상 소정의 중대한 사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